

예산총칙

2026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 (단위: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590,305,244	17,709,157
일반회계		583,127,051	17,493,812
특별회계		7,178,193	215,346
	기타특별회계	7,178,193	215,346
	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62,592	1,878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392,399	11,772
	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	1,112,240	33,367
	주차장특별회계	5,610,962	168,329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27,365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9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